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공무원 출장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 요구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비(국내 숙박비) 제도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숙박비 현실화에 따른 출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숙박비 정액 지급단가(1야당) 상향 조정

(1) 대 상 : 4급 이하 공무원(구미시 여비 조례 별표 1 제2호)

(2) 상향조정 금액 : 당초 3만원 ⇒ 변경 4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제1항

(2)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여비 조례 별표 1 중 제2호 숙박비(1야당)란의 “30,000”을 “4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별표1]					
(단위 원)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0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0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비고 : (생략)						비고 :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전문개정 2008.12.31]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11.10]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桴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11.10]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

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 ~ ⑥ 생략

[전문개정 2010.11.10]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별표 2] <개정 2012.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 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여비(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요구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숙박비 정액 지급단가 상향 조정(당초 3만원 ⇒ 변경 4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12년 관외출장에 따른 숙박비 지급일수가 월평균 600일 정도로
추가 소용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 600일 × 10천 원(상향조정분) × 12월 = 72,000천원

4. 작성자

총무과 인사계장 김희식 (480-6771)

총무과 행정8급 심대보 (480-6775)